‘시민 힘으로 종합경기장 디자인하자’

전주 시민원탁회의 500여명 참석 다양한 의견 제시

제3회 전주 시민원탁회의가 24일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주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원탁회의의 주제는 종합경기장의 미래를 구상하는“Again 1963! 다시 시민의 힘으로 종합경기장을 디자인하자!”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전주시 덕진동에 자리한 전주종합경기장은 1963년 시민의 성금으로 신축된 데 이어 1980년 증축될 때도 절반 이상을 시민 성금으로 충당할 만큼 지역민의 열망과 힘이 응축된 공간이다. 그 시절을 다시 기억하고 시민들의 공간으로 되살리자는 의미에서 “Again 1963!”이라는 슬로건이 붙여졌고 참석한 시민들에게는 종합경기장 추억 공유, 미래 구상 아이디어 제출 등의 미션이 주어졌다.

김승수 시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도시는 기억의 집합이고 시민들의 삶을 담는 그릇인 만큼, 세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복제도시가 아닌 전주만의 정체성을 담는 공간으로 종합경기장을 구상하고 싶다”고 밝힌 뒤 “휴먼파크 조성을 통해 지역상권도 지키고 시민들의 삶도 윤택하게 하는 전주형 시민구상을 실현해가자”고 역설했다.

이날 원탁회의는 1부 ‘종합경기장 추억 공유하기’와 2부 ‘종합경기장 구성요소 찾기’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다. 3부에서는 토론결과 및 참석자 소감 발표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전체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들은 공원, 녹지, 광장, 체육시설, 숙박회의시설, 교통시설, 놀이시설, 쇼핑시설, 문화예술공간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고, 그러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새로운 공간으로 재생될 때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시는 이날 원탁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종합경기장 미래구상을 완성하는 데 밑그림으로 삼을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인 시민의견 수렴, 시민공모전, 집단지성 캠페인 등을 통해 전주시의 미래를 밝히는 위대한 구상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원탁회의 시민기획단 김장현 단장은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열띤 토론이 진행되어서 원탁회의의 취지를 잘 살린 것 같다”며 “이제 첫걸음을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종합경기장 재생 구상에 많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김영재 기자

아동 희망도서 지원 협약 전주시는 24일 시장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양운학본부장, (주)앤아이씨 허성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지혜의 반찬, 아동 희망도서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도서지원 등 관련 업무를 공동 수행하기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효자배수지 등 시설물 정비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효자배수지 등 시설물 정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지붕의 보수가 필요한 효자배수지 등 각 사업장 시설물에 대한 수리와 상수도 생산과정 중 투입되는 살균소독제인 잔류염소에 의해 구조물의 부식이 발생하여 상수도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내부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내달 30일까지 부식을 막기 위한 도료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강풍으로 인해 지붕이 뜯겨져 미관을 해치는 효자배수지와 체육시설이 설치된 지곡배수지의 경우, 안전시설물 미설치로 부상의 우려가 있는 수위계 주변에 안전시설물(안전매트)을 보강하는 등 각 사업장 별 고장이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일제히 수리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일당 검거

자동차 주행거리를 불법으로 조작해 변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덕진경찰서는 24일 중고차 100여대의 계기판 주행거리를 조작해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최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또한 최씨에게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한 랜터카 회사 직원, 중고차 딜러인 김모(37)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차량 100여대의 계기판을 뜯어내고 주행거리를 조작해주는 대가로 대당 8~13만원을 받아 총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진수 기자

단비에 열기 식힌 전북… 내일부터 다시 더워질 듯

24일 내린 비는 기온을 크게 떨어뜨려 때 이른 무더위에 시달렸던 도민들을 달래줬다. 그러나 26일 부터 다시 기온이 오를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전북지역에는 20mm 안팎의 비가내려(오후 2시기준) 전날보다 8도가량 떨어진 18~22도의 기온분포를 기록했다.

적지 않은 비가 내려 한풀 꺽인 더위는 25일까지 지속돼 지난 주 보다 선선하겠다. 그러나 26일 부터는 다시 25~29도의 무더위 현상이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5월의 이상 고온에 대해 고온·건조한 고기압과 남동쪽에서 유입된 따뜻한 공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공기는 한국 상공에 유입된 뒤 동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머물러 폭염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난 17일 최고기온 26.1도를 기록한 것으로 시작해 18일은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등 28~30도의 전북지역 평균 기온 분포를 보였다. 앞서 예년 도의 5월 평균 기온은 17.2도 수준이고 6월 평균 기온도 21.2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여름철 기온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 “엘니뇨의 약화에 따라 여름철 후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겠고, 9월에도 늦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도박중독 예방·치유 본격화

전주시, 공모사업 선정 돼 재활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을 위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도차원의 협약을 맺고 문제도박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

5월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 접수된 전북지역 도박문제 상담건수는 총 1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 건수인 51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총 상담건수는 249건 중 전주시가 119건으로 전북지역 도박문제 전체 상담건수의 4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 지역의 경우 합법적인 사행사업장인 경마와 경륜, 경정 등이 없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특히 최근 오프라인 도박인 성인오락실, 카드, 화투나 온라인 도박인 PC, 스마트 폰과 같은 불법 사행산업을 통한 도박중독문제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도박중독 예방치유서비스 수행기관 공모사업에 참여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달 협약식을 체결하고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준비해왔다.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 사업비 5000만원으로 시행되며, 1~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과 공모를 거쳐 전북센터로 개설하게 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도박문제에 대한 예방·홍보활동 △도박문제 치유·재활서비스 제공 △지역연계를 통한 인프라 구축 등이다. 또, 도박문제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굴 및 개입을 위한 캠페인, SNS 홍보, 문화행사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도박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치유서비스,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된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전북의 문제도박자 유병율은 3.2%로 인구수로 산정하면 약 4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늘어나는 도박중독자와 가족의 회복 과정을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해 도박문제의 조기발견 및 도박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술집 화장실서 여성 훔쳐본 30대 항소심도 무죄

술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예상된다.

공중화장실이 아닌 술집화장실은 관련법에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4년 7월 6일 저녁 9시10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술집 부근 남녀공용화장실에서 A(여?27)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이날 화장실에 들어가는 A씨 몰래 뒤따라 들어가 옆칸에서 볼 일을 보는 A씨 칸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진 장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개방화장실(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정한 화장실) △간이화장실(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 화장실) △유료화장실(화장실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대중목욕탕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은 술집 영업시간에만 문을 여는 술집 외부 건물의 2층 계단 중간에 설치된 남녀공용 실외화장실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